

#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정부,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방침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조정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급제 근로의 경우 지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도 포함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온 문제로,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8시간)의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 수당 지급 약정휴일 제외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 내년 3월 말 등 연장

그러나 정부는 약정휴일의 경우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최저임금 지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간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급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약정휴일과 관련해서 최

저임금 지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조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은 기업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 때까지 또는 내년 3월 말까지로 나뉜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이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거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 장관은 "30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올 3월에는 58.9%였으나 10월에는 87.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 靑, 김정은 30일 담방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담방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담방은 평양 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한 것이기에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전북도 "겨울철 물 걱정 없다"

올 한해 누적강수량 1331.4mm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던 전북도가 겨울철 물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현재 누적강수량이 평년 이상이며,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지난 24일 내다봤다.

이달 20일 현재 전북도 누적강수량은 평년 1283.5mm의 103.8% 수준인 1331.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실제 2017년 누적 강수량 930.8mm보다 400.6mm 많은 양이다.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은 133.5%, 용담 댐 및 부안댐 등 주요댐은 154.9%로 비교적 용수 확보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

보에 따라 당분간 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 여름(6~8월) 전북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대비 66% 수준으로 주의 단계에 도달해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가뭄 및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도내 3788농가 4671.8ha의 농작물과 3만6182마리의 가축 피해 등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올해 가뭄과 폭염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도 가뭄상황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매뉴얼 정비, 물론, 용수개발 사업 조기 마무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철저한 물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내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신혼부부 주택취득세가 '반값' 이라고?

# 도, '새해 달라지는 것' 정리

세제·복지 등 9개분야 83건 이해하기 쉽게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행을 널리 알려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행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복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부동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기존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했으나, 내년 부터는 영상전화로도 119 신고가 가능하여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김진성 기자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내년 2월 23일부터 사용란은 산란일자를 O.O.△△(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연령을 늘리고(20~70세→20~75세), 지원금액을 상향(12만원→15만원)했다.

이밖에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한다.

그간 출연기관, 공기업 직원을 기관별로 수시로 채용해왔으나, 내년 부터는 전라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서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해 채용한다.

도는 이 책자를 배포해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